

회담대책개발기초자료

# 남북한 군축제의 관련 자료집

1994. 12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 목 차

## 1. 군축의 정의

- 가. 전통적 의미의 군축 ..... 6
- 나. 현대적 의미의 군축 ..... 7

## 2. 군축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 가. 우리측 기본입장 ..... 11
- 나. 북한측 기본입장 ..... 13

## 3. 남북한 주요 군축제의 변천과정

- 가. 남북대화이전(1950·60년대) ..... 15
- 나. 1970년대 ..... 17
- 다. 1980년대 ..... 20
- 라. 1990년대 ..... 26

## <부 록>

- I. 남북한 군축관련 쌍방 주요제의 일지 ..... 41
- II. 남북한 군축관련 쌍방 주요제의 전문 ..... 75
- III. 군사분야 관련 남북합의서 전문 ..... 163



## 1. 군축의 정의

- 군비통제(Arms Control) 및 군축(Arms Reduction)에 관한 용어 사용에 있어 국제적으로 약속된 개념 정의는 현재까지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군축관련 용어가 사용빈도의 다소에 따라 변화해 왔음.
  - \* Disarmament : 헤이그 평화회의 때부터 사용, 『무장해제』 의미  
Arms Control, Arms Reduction : 1960대 이후 사용
- 군비축소 또는 군축은 반드시 병력·장비를 감축하는 개념이나 군비통제는 군축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며, 현재는 『군비통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 군사영어사전의 정의

Arms Control(군비통제) : 군사정세상 불안전 상태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취해지는 수단

Disarmament(군비축소) :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

## 가. 전통적 의미의 군축

- Versailles 조약(1919. 6. 28) 이전까지는 군비축소 또는 군축(Disarmamen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
  - 제1차 세계대전 직후 Versailles 조약 체결때까지도 군축(Disarmament)이란 전승국이 패전국에게 군사력을 축소하도록 강제하는 것(Victors in war imposed on vanquished powers)을 의미하였음.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간의 해군력을 규제한 다국간에 맺은 최초의 국제협약은 1922년 워싱턴 해군협정(Naval Agreement)이었음.
  - 1920년대 말 소련은 국제연맹 군축회의(Disarmament Conference of the League of Nations)에서 『포괄적이고 철저한 군축계획』(a plan for comprehensive and complete disarmament)을 제안하여 1932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나 실패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후 『일반군축계획』(a plan for general disarmament)이 유엔(The United Nations)의 주도하에 논의된 바 있고, 이후의 주요한 군축관련 논의로는
  - 국제기구 통제하 핵에너지의 개발·이용과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목표로 한 Baruch Plan

- 재래식 무기감축에서 핵실험 금지 및 사찰문제 등 모든 현대적 무기통제문제를 다룬 1957년 런던 5대국 협상
-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목표로 군축정책 원칙에 합의한 McCloy-Sorin 협정
- 일반군축에 관한 논의를 재개한 제1차 유엔군축특별총회가 있었음.
-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군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군비축소 또는 군축이란 특정범위의 무기나 병력의 감축이나 폐기(reduction or abolition of certain categories of weapons or armed forces)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 전통적 의미의 군축은 정치적·전략적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병력과 장비에 치중한 것으로 군사적·전략적 이해관계가 심각하지 않는 분야에서만 성공적이었음.
- \* 남극조약(The Antarctic Agreement), 우주조약(The Space Treaty)

#### 나. 현대적 의미의 군축

- 군축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으로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개념인 『군비통제』가 1960년대 초에 미국에서 대두되었음.



- 군비통제의 개념적 요소를 보면, 전쟁방지를 위해 적대국간에도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가 있고, 2차적 중요성을 가진 특정범위의 무기 감축이나 폐기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 확보, 군사력·군사기술·교리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내포하고 있음.
- T. C. Shelling과 M. M. Harperin의 정의에 의하면 『군비통제』란 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만일 전쟁 발발시 그 범위와 폭력의 축소 그리고 전쟁준비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잠재적 적대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군사적 협력을 말함.(『Strategy and Arms Control』, 1961)
- 군비통제는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일반적으로 운용적 군비통제와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됨.
  - 운용적 군비통제는 신뢰구축방안, 특정군사행위 금지, 완충지대나 안전지대의 설치, 공세적 배치의 해제 등 군사력의 운용분야를 통제
  - 구조적 군비통제는 핵, 화생무기, 기상무기와 같은 특정무기의 개발을 금지하는 부분적 군사력 구조분야를 통제
- 현대적 군비통제는 특정무기체계나 병력의 감축 혹은 금지 뿐만 아니라 군사력 배치에 대한 통제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 1960년대에는 핵실험금지 조약(NBT, 1963), NPT(1968)가 있고,
  - 1970년대에는 이러한 군비통제의 정의와 일치하는 예로서 대탄도 미사일 조약(ABM Treaty, 1972)이 있으며, 유럽에서는 상호균형감축(MBFR, 1972)에 관한 다자협상이 있었음.
  - 무기의 양적 제한에 관한 협상을 통하여 군비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SALT I, SALT II, START 조약이 있음.
- 최근의 군축과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신뢰구축방안(CSBM, 1985)을 마련하여 최초로 현장사찰원칙에 합의하였고,
    - 1988년에는 미소간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는 INF 조약을 발효시켜 역사상 최초로 특정무기의 전면폐기에 합의하였음.
    - 1990년에는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간에 재래식무기 감축협정(CFE)이 체결되었고,
    - 1991.6 미소간에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이 타결되어 최초로 전략핵무기(발사대와 탄두)의 효과적인 감축을 가져왔음.
  - 역사적으로 보면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진영은 군축(Disarmament)이라는 용어를 고집하여 왔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진영은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고 있음.

- 군축과 군비통제의 차이점은 군축이 최소한 반드시 무장의 감축을 의미하는 반면에 군비통제는 군비감축을 핵심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감축을 하지 않고서도 현존수준 동결이나 상한선 설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임.
- o 남북한간에는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접근방법과 용어의 사용에 차이가 있어 이하에서는 쌍방간 군축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기본 입장을 살펴보고자 함.

## 2. 군축에 대한 쌍방 기본입장

### 가. 우리측 기본입장

- 우리측은 군축(Arms Reduction)과 군비제한, 군비해제, 신뢰구축 등을 포함하는 『군비통제』라는 용어를 1960년대 이전의 『군축』이라는 용어에 대치시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군비통제에 관한 국방부 공식 정의에 따르면 『군사력의 건설, 배치, 운용, 사용을 확인, 제한, 금지 또는 축소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고 합의사항 위반을 제재함으로써 전쟁위험 및 피해를 감소시켜 공동안보를 증진하는 국가 대전략 차원의 정치, 군사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축(Arms Reduction)』은 구조적 군비통제의 하위개념으로 상호간에 군사력의 규모(병력과 장비)를 축소하여 군사력의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전쟁발발 위험성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는 것을 의미
  - 『군비제한(Arms Limitation)』은 군비를 적절한 수준이상 증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을 의미
  - 신뢰구축방안(Confidence Building Measure)은 적대관계에 있는 두나라 사이에 군사적 경쟁, 전쟁위험을 초래하는 상호불신, 적대감, 불신감 등의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안보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군축단계 이전에 선행되어

## 야 할 운용적 군비통제의 일부분

- 우리측은 분단이후 70년대까지 북측의 우세한 군사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여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고자 북측의 공세적·선전적 군축 제안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음.
  
- 국력의 대북우위를 확보하고 자주국방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80년대 부터 적극적으로 군사문제를 정치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 문제와 병행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군사력의 균형유지→군축이라는 기능적 접근방법에 의한 군비통제방안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있음.
  
- \* 유엔군축특별총회시 『3단계 군축방안』(1988.6.10), 노태우 대통령 『유엔연설』(1988.10.18),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9.11)
  
- 우리측은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4~7)에서 포괄적·종합적 군축방안을 제시하고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군비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선 군사적 신뢰구축, 후 군비감축』의 단계적 추진 입장을 견지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에서 군사공동위원회 기능(제12조)을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문제를 협의·추진하도록 규정할 것을 주장하여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켰음.

- 불가침 부속합의서에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협의·실천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나. 북한측 기본입장

- 북측은 군사문제 최우선 해결이라는 입장에서 군비통제보다는 일괄 타결에 의한 무력감축을 의미하는 군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는 바, 조선말 대사전(1992)에 따르면
  - 『군비축소』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갖춘 병력과 무기를 비롯한 수단들을 줄이는 것이며,
  - 『군비제한』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갖춘 병력과 무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들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북측은 남침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후, 『외국군대(미군) 철수』와 『10만이하 감군』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인 군사력 우위 확보와 군사력 증강을 은폐하고, 대외적 평화이미지 조성을 위한 위장선전공세의 일환으로 군축에 적극적·공세적 입장을 견지하였음.
- 월남 패망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자, 북측은 이의 중단을 요구하면서도 전치배치 기습공격전력(북한군의 60%)의 후방

배치와 군사훈련 참관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에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였음.

- 북측은 다국적 군축협상방안』(1987.7.23)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일괄타결방식에 의한 군축』에서 『단계적 군축』으로 입장을 전환하였음.

\* 89~91년까지 3단계 병력축소, 92년부터 각기 10만이하 병력유지

-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방안』 10개항(1988.11.7)은 이전까지의 군축제안을 종합한 것으로
  - 기존의 『10만이하 감군』과 『주한미군철수』 주장외에 『신뢰 조성』과 『군축 이후의 평화보장』을 내놓아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냈음.
- 남북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북측은 신뢰조성 문제는 군축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신뢰구축과 군축의 병행추진』 입장을 고수하였음.

### 3. 남북한 주요 군축제의 변천과정

- 남북한의 군축과 관련한 제의는 쌍방의 통일정책·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 우리측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70년대 초부터 신뢰구축분야에서, 80년대 말에는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관련된 제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과거의 수세적이고 거부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주도적 입장에서 군축을 포함한 군비통제를 이룩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북측은 군사문제의 해결보다는 명분과 선전에 치중하여 연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기간에 걸쳐서 공세적·적극적 제의를 해 왔으며, 80년대 말에는 그동안 군축과 관련한 제의를 체계화한 『포괄적』방안을 제시하였음.

#### 가. 남북대화 이전(1950·60년대)

-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체결 이후 60년대까지는 ‘민주총선거’에 의한 통일을 제외한 어떠한 통일방안도 발표한 바 없으며, 『선건설·후통일』의 입장에서 경제건설을 통한 체제정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북측의 선전적 군축제의를 묵살함으로써 사실상 군축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대북협상방안은 없었다고 하겠음.
- 북측이 휴전직후 50년대에 군축과 관련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남제의를 한 것은 내부적으로 6.25 남침실패와 피해에 대한 책임을 한·미측에 전가시키는 한편 파멸상태의 군사력을 복원·확충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내외적으로 평화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임.

- 북측이 60년대 전반기에 상호불가침과 병력감축·미군철수에 관한 제의를 주로 한 것은, 4대군사노선(전인민 무장화, 전군 간부화, 전지역 요새화, 전군 현대화)에 따른 군사력 증강 우선 정책을 통한 군비증강을 위장하는 동시에 한·미안보체제를 이간시키기 위한 평화공세에 불과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남조선 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계렬라를 대대적으로 남파하여 한국정부의 전복을 추구하면서 폭력행사를 대내외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었음.

※ 한반도에서 군비증강을 규제한 최초의 규정으로 한국전쟁을 종결짓는 휴전협정에서 쌍방은 교체하는 경우 이외의 한국경외로부터 『군사인원의 증원 정지』(13항 ㄷ목) 및 『작전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 증원 정지』(13항 ㄹ목)를 규정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통제하는데 합의한 바 있음.

- 북측의 무기 및 장비의 불법반입과 이에 대한 중립국감독위원회와 중립국 시찰소조의 시찰을 지연시켜 유엔사측은 제75차 군사정전위 회의(1957.6.21)에서 정전협정 13항 ㄹ목의 잠정폐기를 선언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소집된 제네바 정치회의(1954.5)에서

- 우리측은 외국군대철수와 관련, “유엔군은 통일한국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철수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1954. 5. 22)하였으며,
- 북측은 『단기간내 모든 외국군대 철거』와 『남북한 군대의 10만이하 감축』을 주장(1954. 6. 15) 하였음.
  - \* 우리측은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 10. 1 서명, 1954. 11. 18 발효), 북측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1961. 7. 6 서명) 및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1961. 7. 11)을 체결하여 각기 동맹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o 군축과 관련한 북측의 주요제의로는 1956. 8. 31까지 인민군 8만명 축소를 발표하여 군축에 적극적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진력한 정부 성명(56. 5. 31), 주한미군철수 후 남북한 각기 10만이하 감축 및 무력불사용 협약체결을 제의한 최고인민회의의 제2기 11차회의 결정(62. 6. 21) 등이 있음.

## 나. 1970년대

- o 우리측은 70년대부터 능동적으로 단계적·기능적 통일접근정책을 추진하면서,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군축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뢰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의하였음.
- 북측은 미·소간의 데탕트와 미·중 관계정상화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간의 급격한 관계변화에 대한 적응, 월남패망 후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 약화, 국제적 반핵운동에 편승한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철수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당사자 입장 약화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의하였음.

- 70년대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부간의 공식협상이 진행되어 통일에 관한 기본입장이 형식적·잠정적으로 정립된 시기로
  - 남북한은 1972.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에 합의하고, 긴장완화와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상비방·무장도발 금지,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돌발적 군사사고 방지와 분쟁처리를 위한 직통 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음.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1973.3.14~16)에서 우리측은 군비축소 문제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 북측은 『5개항의 군사제안』을 내놓고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를 먼저 협의할 것을 주장하여 종전의 입장을 견지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1973.4.5)에서는 미군이 철수하는 경우 북한군을 20만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추가하였음.

- 우리측은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 6. 23)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간 불간섭·불침략과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것을 제의하여 대공산권 문호를 개방하여 군축을 위한 신뢰구축 노력을 계속하였음.
-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1974. 1. 18)에서 남북간 상호불가침 협정체결을 제의하면서
  - 북측의 주한미군철수와 10만이하 감군 제의는 우리의 국방력을 무력화·무장해제시키고 무력남침 적화통일을 하려는 것이며,
  - 정전협정상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 금지조항도 북한이 먼저 위반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간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 상호무력불침범, 상호내정불간섭, 현행 휴전협정 효력존속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지는 입장을 밝혔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1974. 3. 25)에서 허담 외교부장은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 남북한간 상호불가침 서약을 통한 무력충돌의 위험성 배제,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의 중단, 군비의 반입중단, 유엔군의 해체 및 외국군대의 철수와 외국군대에 의한 한반도 군사기지화 방지 등을 제안하고 이를 토의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 보다 상위급 회의 개최를 주장하였음.

- 우리측은 광복절 29주년 대통령 경축사(1974. 8. 15)에서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상호문화개방 및 신뢰회복,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이라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천명하여 신뢰회복이 없이는 군축 등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 북측은 외교부장 허담의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보고(1974. 11. 6)에서 군사당국자 쌍무회담을 주장하며 무력불행사의 상호보장과 군사정전위를 대신할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음.
- 월남 패망이후 열린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1975. 10. 21)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 현행 휴전협정 보전, 휴전협정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하에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유엔군 철수 동의, 휴전협정 대치를 위한 협상 용의, 남북대화 즉각 재개를 제의하여 북측의 유엔군 철수 공세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정리하였음.

#### 다. 1980년대

-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측은 본격적으로 군비통제 분야에서 군비 경쟁의 지양을 주장하고, 신뢰구축분야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시기로

- 북측은 미군철수를 목표로 3자회담을 추진하며 미군철수를 강도높게 주장하고 병력감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의하였음.
- 특히 80년대 후반에는 탈냉전의 세계적 조류속에서 소련의 개방·개혁·민주화와 동구권의 변화로 인해 체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이 우리측의 남북고위급회담 제의에 응해 나와 『불가침』을 포함한 쌍방 주장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진행되었음.
- 우리측은 대통령 국정연설(1982.1.22)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하면서 통일헌법을 마련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며, 현존 휴전체제 유지 및 군비경쟁 지양 등을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 군축과 관련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지양을 통해 군축의 바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국토통일원장관의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82. 2. 1)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내 군사시설 완전철거 및 군비통제 조치 협의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등을 제의하였음.
- 북측은 제6차 당대회 김일성 보고(1980.10.10)를 통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관련 10대 시정방침을 내놓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고 쌍방 군대를 각각 10만~15만

으로 감축하자고 주장한데 이어 3자회담을 제의(84. 1.10)하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남측과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음.

- 또한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86. 6.17)에서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중지문제, 병력과 군비축소문제, 정전협정 준수문제와 기타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여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군축 중심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였음.
  
- 우리측은 북한의 3군사당국자회담 제의에 대해 이기백 국방장관의 대북서한(86. 6.24)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전적인 군사회담 제의보다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주요 군사훈련의 상호통보, 주요 군사훈련 상호참관·초청, 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상호확인제도 설치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부터 토의하자고 강조하였음.
  
- o 북측은 남북한·미국이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제의(1987.7.23)에서 3단계 무력축소(1992년 10만이하 유지), 미군 단계적 철수, 남북무력 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 통지 및 공포,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과 중립국감시군 배치, 다국적 군축협상(1988. 3, 제네바) 개최 등을 내놓아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한 선전공세를 전개하였음.

- 우리측은 이에 대해 외무부 성명(1987. 8. 3)을 통해 남북외무장관 회담을 제의하고
  -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 기존 대화의 재개, 신뢰구축문제와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남북총리 회담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 회담 실현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음.
  
- 우리측은 군축에 관한 기본접근방향으로 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 외무부 장관 연설(1988. 6. 10)을 통해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남북한간 대화재개와 협력확대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 둘째,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불가침 협정 체결
  - 셋째, 한반도 군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 협상 제의
  - 또한 제43차 유엔총회 대통령연설(1988. 10. 18)에서는 남북정상 회담에서 남북한간 기본적 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공동 선언하자고 제의하고 정상회담에서 불가침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북측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1988. 11. 8)에서 포괄적 평화방안을 제의하였는 바, 분단이후 제기해 온 대남 군사제안의 총결집판으로 이후 80년대 군축관련 제안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임.
- 동 방안은 우선 제안내용의 순서가 미군철수, 남북무력 감축, 3자회담,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으로 되어 있어 종전의 군축 우선 주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 내용면에서는 병력감축 속도와 폭이 현실성이 없고,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축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우리측은 강영훈 총리의 대북서한(1988. 12. 28)을 통해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서 남북간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였음.
- 이에 따라 개최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에서 우리측은 1차 예비회담(1989. 2. 8)에서 군사분야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고 정상회담에서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이 논의되고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본회담 의제 6개항 중 제4항)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 남북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가설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군인사의 상호교류
  -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초청
- 이에 대해 북측은 2차 예비회담(1989. 3. 2)에서 예비회담의 성과적 진전을 위해서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o 우리측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1989. 9. 11)시 군사분야에서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 o 80년대 남북한의 군축에 관한 입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 우리측은 군축을 위해서는 신뢰구축이라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점, 3단계 접근 방안으로 상호신뢰구축, 불가침 협정체결, 구체적 군축협상을 제시한 점, 회담형태로 총리회담과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시한 점 등이며,

- 북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미군을 포함한 단계적 군축방안을 내놓은 점, 소극적이거나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한 점, 회담형태로 3자회담을 주장한 점 등임.

## 라. 1990년대

- 90년대에 들어와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독일통일, 소련의 해체 등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 우리측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전방위 외교를 통해 마련한 확고한 대북우위를 바탕으로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 군축을 주장하며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 북측은 체제붕괴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에 응해 나와 남북간에는 『불가침 분야』의 내용을 포함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및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에 합의하여 군축과 관련하여 이행·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시기로 쌍방의 제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북측은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1990.5.31)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을 내놓으면서 1988년 11월의 『포괄적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제안내용의 순서를 남북신뢰조성, 남북무력축감, 외국무력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으로 배열하고 있어 신뢰구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인 점과
  - 내용상으로 남북신뢰조성 부분에서 정치적 신뢰조성을 제외한 군사적 신뢰조성을 제시하여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위해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과 훈련 금지를 주장하였고,
  - 남북무력축감 부분에서 군축안 합의시로 부터 3~4년에 걸쳐 3단계로 실시할 것, 외국무력철수 부분에서 시기를 명시함이 없이 남북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부분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제의한 것 등이 있음.
-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1990.7.26)에서 합의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1990.9.4~7)에서
- 우리측은 군축에 관한 원칙적인 입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에서 군비경쟁 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을 제시하면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 바, 이는 우리측 최초의 군축 방안으로
  -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서 군인사의 상호방문 및 교류, 군사정보의 상호공개 및 교환, 특정규모이상의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 통보 및 초청·참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등을 제의하면서

-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위에 본격적인 군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군비감축 추진방향으로 공격형 전력구조의 방어형 전력구조로의 전환, 상호 동수보유원칙에 의한 군사력의 상호균형, 무기감축에 따른 병력감축 및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한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 감축, 현장 검증과 감시, 쌍방 군사력의 최종수준은 통일국가 군사력 소요 감안 결정 등을 제시하고,
- 군축이 진척될 경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국제적 평화 보장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0개항을 그대로 들고 나와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군사적 대책을 취하는 것과 함께 남북간 불가침 선언 및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 불가침 선언의 구성요소로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침략과 무력간섭 불가담, 남북간 무력축감과 미군철수 등 기본적 군사적 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고,
- 특히 팀스피리트 훈련을 완전히 그만두거나 회담을 살리는 견지에서 2~3년 동안만이라도 중지할 것을 제의해 옴.

- 북측은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10. 16~19)에서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여 무력불사용 및 불침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은 군사분계선으로 할 것, 군비경쟁중지 및 무력의 단계적 감축,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등의 기존의 주장 내용 중 남북불가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열거하여 종래 주장을 반복하였음.
  
- 우리측은 제3차 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1990. 11. 21)에서 우리측의 기본입장이 상호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불가침의 효력이 보장된다는 것임을 밝히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였음.
  - 군축과 관련하여 제5조에 『무력대치상태 해소위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을 포함시켜 북한측 주장을 감안한 방안을 내놓았고, 제10조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의 신뢰구축문제 협의·해결』을 포함시켜
  - 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단계적 군축을 위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는 기존의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1990. 12. 11~14)에서
  - 우리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에서 주로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 신뢰구축이 없는 군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북측은 우리측의 『남북한 군비감축 추진방향』이 군축과 관련한 극히 일반적인 방향만 밝힌 점과 『신뢰조성 우선론』을 비난하면서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하였음.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제46차 유엔총회에서

- 우리측은 대통령 기조연설(1991. 9. 24)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군비감축 추진』 입장을 천명하였음.
- 북측은 연형묵 총리연설(1991. 10. 3)에서 불가침 선언 채택과 함께 군축 실현을 주장하여 종전의 입장과 차이가 없었음.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1991. 10. 22~25)에서

- 우리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에서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제6조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지양 및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정보교환 및 군인사 상호방문·교류, 부대이동·기동훈련 사전통보와 참관단 교환초청,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군사력 불균형 시정과 군비축소문제 협의, 현장검증과 상주감시체제 교환 운영, 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제시하여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력 불균형이 시정된 후 군비감축문제를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특히 북한의 군사정책이 변화되고 방대한 무력과 공격능력을 먼저 제거하며 공세적으로 전진배치된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군축을 이른바 신뢰구축단계 이후의 문제로 보고 뒤로 미루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라고 비난하면서
  - 남북 불가침선언과 화해·협력·교류에 관한 문건을 통합한 『남북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여 군비경쟁 중지와 군축 실현(제4조)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해결할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제6조)을 제시하여
  - 군축과 관련한 제반문제를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1991.11.11)에서
- 우리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비감축(제14조)을 위한 조치 중 특징적인 것으로 『핵무기·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포함한 기습공격능력 우선 제거, 군사력 불균형 시정, 군비축소 추진』을 제시하였고,



-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실천하여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군사력 불균형을 시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음.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타결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1991. 12. 10~13)에서
- 우리측은 군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측의 주장을 감안하여 7개항의 세부사항을 없애고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축소, 현장검증, 직통전화 설치 및 남북군사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5개 독립조항으로 조정한 안을 제시하였고,
  - 북측은 우리측 안이 신뢰구축단계만 하여도 10여년이 걸린 유럽식 경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정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 제14조에 따라 불가침분야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른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해 개최된 군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1992. 3. 13)에서
- 우리측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 규정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천하기 위한 합의문건을 개별합의, 즉각실천함과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제거문제, 단계적 군비축소문제, 검증문제를 협의·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에서 군사공동위원회가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였음.
- 북측은 군사분과위원회는 협의기구지 실행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에서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고,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에서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으로 부속합의서의 실천 및 기본합의서 제2장 12조와 그밖의 실천적 문제를 협의·추진할 것을 주장하여
- 군축을 포함한 군사적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추진하자고 하여 군사분과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려는 입장을 보였음.
- o 우리측은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1992. 4. 30)에서 『남북사이의 불가침 이행과 준수를 위한 무력불사용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 제12조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기타 문제는 『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

해결하자고 하여 군축에 관한 문제도 군사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음.

○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5. 7)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타결지었는 바,

-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으로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 협의, 필요한 합의서 작성·실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 실천을 규정하였음.

○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를 타결지은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1992. 9. 15)에서

- 우리측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무력불사용에 관한 조치가 취해지고, 동시에 군사정보가 상호 교환되고 군인사가 서로 오가면서 믿음을 쌓게 되며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고 대량살상무기가 제거되는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인 군축을 실현하는 문제가 본격 협의·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 특히 분과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합의하지 못한 미해결사항이나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사항, 그리고 고위급회담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협의하는 기능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민족적 이익에 부합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특히 모든 도발적인 합동군사훈련과 군사행동을 중지할 것과 일반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문제는 군축문제로서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아닌 군사공동위원회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였음.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군축과 관련하여
  - 제1장 부기사항에 군사분계선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등을 규정하였고,
  - 제5장 협의·이행기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제16조)한다고 규정하여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을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도록 하였고,
  -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군축과 관련한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및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는 군축을 위한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을 합의·실천하기 위한 원칙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냄으로써 이러한 토대위에
  - 향후 구체적인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남북간의 계속된 협의와 실천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여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임.
  
- 이어서 열린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을 위한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1992. 10. 28)에서
  - 우리측은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하게 되어 있는 만큼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을 위한 통신실무자접촉 합의서(안)』을 타결지어 상호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데 대해
  - 북측은 한·미 군사위원회와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중단되었던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비난하면서 이를 먼저 철회해야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음.
  
- 북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구실로 공동위 북측위원장 연합성명(1992. 11. 3)에서 그해 11.5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동위 제1차 회의에 불참을 선언함으로써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리지 못하여 합의의 이행·실천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

- 북측은 중앙인민위원회 결정 및 정부성명(1993. 3. 12)을 통해 팀스 피리트 훈련재개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구에 대해서 NPT 탈퇴를 선언하고 긴장된 정세를 조성하여
  - 남북간의 대화는 중단되었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및 정부성명(1993. 3. 12)을 통해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범세계적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이미 남북간에 채택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부속합의서 등 모든 남북합의사항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여
  - 북측이 남북합의서 이행과 실천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포함한 모든 합의사항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음.
- 이후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1993. 4. 7)에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대남 4대 요구사항』을 채택하였는바,
  - 4대 요구사항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중지, 핵우산 제거 등을 주장하여 이러한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군축을 포함하여 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우리측은 제48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1993. 8. 15)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혹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노동1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 민족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그만두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합의서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북측은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제4차 실무대표접촉(1994. 3. 3)에서도 특사교환의 전제조건으로 4개항을 제시하였는 바,
  -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과 관련된 것으로는 대규모 핵전쟁연습 중지,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신형무기 반입중지 등을 요구하여 남북대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였음.
- 한편 북측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대미협상제의』 외교부 성명과 『군사정전위 기능중지 통보』 군정위 비서장 서한(1994. 4. 8)에서
  -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 '94 팀스피리트 훈련재개, 아파치 헬기 반입 등으로 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하자고 강변하였음.

- 특히 북측은 군정위 요원 철수, 폴란드 대표단 철수, 군정위 해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군측과 접촉을 통보하였는 바,
  - 이러한 북측 태도는 핵무기 개발의혹을 희석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남측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선전적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논평(1994. 4. 29)과 통일원 대변인 성명(1994. 5. 3)에서
-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제5조에 규정된 대로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 정전협정 준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군축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군정위 무용론 운운하면서 긴장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음.
- 우리측은 제4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1994. 8. 15)에서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핵을 무기로 하는 모험을 중지해야 한다고 하여



- 군축을 위해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종래의 입장을 다시한번 분명히 하였음.

남북한 군축관련 쌍방 주요제의 일지  
(1954. 1~1994. 12)



## 남북한 군축관련 주요제의 일지

54. 5.22 ○ 변영태 외무부장관, 한국통일방안(14개항) 제의
- ⑩항 군대의 해산에 관한 문제 등은 전한국 입법기관이 설치된 후 결정
  - ⑫항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전 북한으로부터 철수 완료
  - ⑬항 한국으로부터의 유엔군 철수는 선거에 앞서 시작, 전한국이 통일한국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할되고 유엔이 이를 증명할 때 완료
54. 6.15 ○ 북한 외무상 남일, 남북군축 및 전쟁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위한 남북간 협정체결 제의(제네바 정치회의)
-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
  - 『외국군대 철거 기한』은 제네바회의 참가국들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
  -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조선 군

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측 군대의 수효가 10만명을 넘지 않게 할 것

-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북한정부와 남한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한 남북한 대표들로 위원회 구성

55. 3.1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선언

- 조속한 기간내에 일체 외국군대를 조선지역으로부터 철거하며 남북조선 군대수효를 『10만명』까지로 각각 축소

55. 8.14 ○ 김일성, 8.15 해방 10주년 경축대회 연설

- 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남북조선 인민들이 자기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
-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군대철수 조치
- 남북조선 당국은 상호 무력불행사 및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문제 해결의무 준수에 대해 대내외에 선언

- 남북조선 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

56. 5.31 ○ 북한 정부성명, 조선인민군 병력감축 발표

- 56. 8.31 이전에 북한 무장부대중에서 8만명 감축

60. 8.14 ○ 김일성, 8.15 해방 15주년 경축대회 연설

-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물러가게 하고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이하』로 축소

-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조선 대표대회 개최 제의

62. 6.2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회의, 남북당국간 『무력불행사협약』 체결 제의

- 남북 정권당국이 상호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

- 남조선의 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하는 조건하에 남북 조선군대 각각 『10만이하』로 축소

\* 남조선에서 미군침략군대 당장 철수

- 남북 당국간 협상 개최 제의 : 『협의내용』은 ▲무력 불행사 ▲미군철거 ▲쌍방 군대 축소 등

66. 7.21 ○ 북한, 대유엔 정부비망록 발표

-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당국이 외국과 체결된 일체 군사조약과 협정을 철폐하는 조건하에서 북측이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의 폐기 용의 표명

71. 4.12 ○ 북한 외무상 허담, 『8개항 평화통일방안』제의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 첫째, 남조선에서의 미제침략군 철거
- 둘째,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
- 셋째, 남조선이 외국과 체결한 매국적·예속적 조약과 협정의 폐기 및 무효 선언
- 여덟째,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정당·사회단체와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남북조선 『정치협상회의』진행 등

73. 3.15 ○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 제2차 회의 발언

- 『군비축소문제』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진정한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행위부터 중지
- 현재 『군비축소』의 논의는 시기상조 및 군비축소 논의 불가 입장 표명

73. 3.15 ○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대리 박성철, 5개항 군축제의(제2차회의)

- 남북간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대치상태 관련 5개항목의 군사제안을 우선 토의할 것을 요구
  -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 ② 상호 10만 또는 그 이하로 감군하여 군비를 축소
  - ③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군수물자의 반입중지
  - ④ 미군을 포함한 외군철수
  - ⑤ 상기문제의 해결 및 무력불행사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체결
-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 쌍방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간부들을 참여시키든가, 군사분과위를 설치하여 이상 5개항에 대한 집행대책 협의



73. 4. 5 ○ 북한 정무원총리 김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 보고

- 『5개항 군축제안』('73. 3.15)에 합의, 조속히 해당한 조치 강구 주장
-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북한의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감축 천명

73. 6.23 ○ 김일성, 체코 『후사크』 환영연설

< 평화통일 5대강령 >

- 남북관계개선과 평화적통일을 촉진키 위한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긴장상태의 해소를 위해,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②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③ 군대·군비의 축소, ④ 외국으로부터 무기 반입 중지, ⑤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

74. 1.18 ○ 박정희 대통령,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연두 기자회견)

-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 진정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 통일에 이르기까지 과도적 평화 공존의 토대로서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

- 불가침협정의 주요내용은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 ▲상호 내정불간섭 ▲여하한 경우에라도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

74.11.25 ○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이종욱, 제29차 UN총회 연설

-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하고 직접적 무력충돌의 모든 위험성 제거
-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 두며 조선 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군수물자의 반입 중지
-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유엔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
-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이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되는 것 반대
-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제의 등

75.10. 9 ○ 김일성, 조선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연설

- 북·미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 미군철수 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남북군대 각각 10만 또는 20만 이하 감축 ▲군비경쟁과 무력증가 중지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 반입 중지 등

75.10.21 ○ 김동조 외무부장관, 제30차 유엔총회 정치위원회 연설

- 첫째, 현행 휴전협정 보전
- 둘째,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회의 개최
  - \*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유엔군의 철수가 1976년 1월 1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말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
- 셋째, 휴전협정을 대치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기타 조치를 고려할 용의 표명

- 넷째, 긴장완화와 궁극적 화해를 위한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의 즉각 재개 등

75. 10. 27 ○ 북한 외교부 부부장 이종욱, 제30차 유엔총회 연설

- 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수한 다음에 남북사이에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

77. 1. 25 ○ 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양형섭 보고

- 남북사이의 긴장상태 해소와 핵전쟁 위험 제거로서, ▲미군철수 및 무력증강·군비경쟁 중지 ▲남북 군사당국간의 『군비축소회의』 개최 등

77. 1. 28 ○ 장기영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대리 성명

- 남북간의 보다 안정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촉구, 만약 북한측이 이를 수락, 불가침협정이 정식 체결된다면 주한미군의 철수에 불반대
- 더이상 지체함이 없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재개되는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방안으로 남북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하는 문제 토의 제의

80.10.10 ○ 김일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관련 10대 시정 방침·제시(제6차 당대회 보고)

< 일곱째,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및 민족연합군 조직 >

-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잔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축소
- 군사분계선 철폐,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시설물 제거, 남과 북의 민간군사조직 해산, 민간군사훈련 금지
-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 단일한 민족연합군 조직

< 아홉째, 두 지역정부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

- 통일이전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협정 폐기

< 열째,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

- 통일조선은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불가담·불협상

- 연방국가의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 주둔, 다른나라 군사 기지 설치 불허용
- 핵무기 생산·반입 및 사용금지,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지대화·비핵지대화

82. 1. 22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 제의

〈잠정협정 7개항중 관련부분〉

- 둘째, 쌍방은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 협의

82. 2. 1 ○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제의

-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시설 완전철거
- 20. 남북간에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용

84. 1.10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 정무원 연합회의, '서울당국과 미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편지 채택

< '3자회담' 개최제의 >

-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일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 군대 주둔 및 모든 군사통수권 장악
  - \*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 긴장상태 완화 위해 우선 미국과 문제해결 필요
- 미 · 북한간 회담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있는 『서울당국』도 동등자격으로 참가 인정

< '3자회담' 토의의제 >

- 조선정전협정 체약쌍방인 미 · 북한간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로,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 선포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 모든 외국군대 철거 ▲기타 공고한 평화 보장조건에 관한 문제 포함

- 남과 북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불행사 ▲군비를 축소  
할 데 대한 문제 포함

85. 4. 9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4차회의, 『남북국회회담』제의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발표 제의〉

- 『3자회담』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긴장완화와 평화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민족끼리 마주 앉아 해결
-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

85. 8.15 ○ 전두환 대통령, 남북 당국간 회담시 『불가침문제』토의·  
해결 천명(광복절 40주년 경축사)

- 남북 당국간에 『불가침문제』를 비롯, 남북한의  
정상적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 빨리  
토의·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
- 북한측은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에 대한 준수·실천의지의  
유무 여부



86. 6.17 ○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3군사당국자회담』제의  
(6. 9자 대남편지)

〈 토의의제 〉

- 북한 인민무력부장과 남한 국방부장관, 남조선주둔 연합국 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 협의·해결
-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

86. 6.24 ○ 이기백 국방부장관, 3군사당국자회담 거부 대북서한

-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에 대한 적대정책·휴전협정 위반이 원인
- 기존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 『주요군사훈련의 상호통보』, 『주요군사훈련 상호참관 초청』, 『공동경비구역내에서 상호 확인제도 설치』등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부터 토의

86. 6.23 ○ 북한 정부성명, 『조선반도 비핵지대·평화지대』창설협상  
제의

- 첫째, 북한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불허
  - \* 외국핵무기들의 영토·영공·영해통과 불허
  
- 둘째,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평화지대로 하기 위해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반입 중지
  - \*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 완전 철수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 관련 모든 작전 계획 취소 조치 강구
  
- 셋째, 북한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동 제의와 관련,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 어느 때나 호응

87. 1.11 ○ 북한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편지,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제의

-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서는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기초위에 남북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협의

- 군사적 긴장상태완화 위한 당면조치로 ▲무력축소 및 군비경쟁 중지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큰 규모의 군사연습 중지문제 등 협의
- 이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제고 문제 및 중립국감시군 조직문제 협의

87. 7.23 ○ 북한 정부성명, 남·북한·미국참가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 대규모 단계적 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 >

- 첫째,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축소,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유지
-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
  - \* 북남병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 포함 모든 무력철수·군사기지 철폐
- 셋째,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지, 미국은 자기군대 철수정형을 북측에 통지(각기 세계에 공포)

\* 『중감위』는 북남무력축소·미군철수정형 확인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 넷째, 북과 남의 병력축소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 위험성 방지 및 평화유지를 위해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중립국감시군 주둔
- 다섯째, 북과 남, 미국 및 『중감위』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 군축협상』진행(1988년 3월, 제네바)

\*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 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문제 ▲『중감위』의 권능확대와 중립국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문제 등 토의

※ 북한은 동 제의시 한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1987년말까지 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 선포

### 87. 8. 3 ○ 외무부 성명, 『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

#### <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문제 등 협의 >

- 북한측이 팀스피리트훈련을 구실삼아 모든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채 『3자군사당국자회담』,

『3자군축협상』을 들고 나온 것은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배치

- 남북한간 군축문제는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의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신뢰회복  
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이 보장
- 이러한 견지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과 『유엔  
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외무장관회담』 개최 제의
  - \*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위해 군축을  
포함한 제반 문제와 ▲남북총리회담을 성사, 궁극적  
으로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실현문제 등 협의

88. 6.10 ○ 최광수 외무부장관,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  
제시(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 연설)

- 포괄적 완전군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유엔  
체제하에서 진행되어 온 『다자군축협상』에 대해 지지
-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군축은 남북한간의 신뢰회복  
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만 가능하  
는 기본인식하에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  
안』 제시
  - \* ▲상호신뢰구축 ▲적대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적 보장장치로서 『불가침협정』체결에 합의 ▲그러한 다음 『한반도 군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

88. 7.2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남북국회연석회의』제의 (대한민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

- 남북 국회연석회의에서는 북과 남의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문제 토의
-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유익한 남측이 제기하는 문제도 함께 토의
- \* 불가침문제의 성과적 추진을 위해 『북남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동봉

〈북남불가침 공동선언(초안) 주요내용〉

-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불사용·불침해
- 상호 무력의 단계적 대폭축소 및 조선반도주둔 외군·핵무기의 단계적 철거조치 강구
- 현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및 그 안에 『중립국감시군』 주둔 등

88.10.18 ○ 노태우 대통령, 『남북정상회담』토의 의제에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 포함 제시(제43차 유엔총회 연설)

-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
-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논의
- \*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강구

88.11. 7 ○ 북한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 『핵무기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
- \*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북위 35도 30분 이북 지역 배치 핵무기 철수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 철수

-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진행
  - \* ▲1단계(1989년말까지) 미군사령부 및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 부산·진해계선으로 철수 ▲2단계(1990년말까지)는 지상군전체를 완전 철수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공군 전체 철수

◁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

- 북과 남은 서로 병력축감방법으로 무력균형 유지,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
  - \*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1992년말까지 10만명이하로 유지
-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의 단계별 축감
  - \* ▲핵무기·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폐기 ▲무력축감 시작 후 외부로부터의 군사 장비 반입 중지
- 무력축감 시작 후 6개월안에 모든 민간 군사조직 해체
- 기타 북한과 미국, 남한사이에 『3자회담』을 개최하고 『3자회담』에서 미군무력철수·남북무력축감 문제 합의에 기초, 미·북한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간 불가침 선언으로 확인·고착



88.12.20 ○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 『3자회담』제의 대남편지

-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남북간 무력감축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는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제로서, 당사자들인 남북한·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3자회담』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미군무력의 철수’와 ‘남북간 군축방안’ 등을 토의

88.12.28 ○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 대북서한

-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간에 회담 개최
- 『토의의제』에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기타 북측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신뢰구축·긴장완화 방안 포함

89. 2. 8 ○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예비회담시 우리측 제시 의제

-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통일실현문제와 『불가침 선언』을 비롯,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군비축소 등의 군사문제 논의·타결  
가능함을 표명(수석대표 첫발언)

- 본회담 의제에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남북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군인사의 상호교류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초청) 등 포함

89. 9.11 ○ 노태우 대통령,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천명시 『남북 연합체제』구성 제의

< 『군사분야 전담기구 역할』 >

-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 해소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실현
- 현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뀌어나가는 문제 등 협의
- \* 『민족공동체헌장』채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해 포괄적으로 합의할 것을 제의

90. 5.31 ○ 북한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 채택

〈 북남신퇴조성 〉

-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 \*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군사훈련 금지 등 5개항 제시
-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방지 위한 안전조치로서 쌍방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2개항 제시

〈 북남무력축감 〉

-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 『병력축감』은 쌍방 간 군축안 합의이후 3~4년간 3단계로 나누어 실시
  - \* ▲1단계는 쌍방 각각 30만명선으로 축소 ▲2단계는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 ▲3단계 종료시는 쌍방이 각기 10만명 이하 수준 병력 유지
-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하고 정규무력축감의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력 해체

- ▲『외국무력의 철수』로써 주한미군·장비·기지의 남북 간 무력축감에 상응한 『단계적 완전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으로서, ‘중립국감시군’ 배치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구성·운영을 주장하고 ▲불가침 선언 채택 및 대폭적 군축에 합의할 것을 주장

\* 기타 현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강조 및 미국 측에 평화협정체결 위한 『미·북한회담』 및 『3자 회담』호응 촉구

90. 6.27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10개항 군축제안』관련 기자회견

- 남조선의 『불가침조약』은 남북 현상태의 상호인정·내정불간섭·무력불사용 등을 약속하자고 한 것인 반면,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은 불가침의 약속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북남군축』 『외국군대철수』등 원칙적 문제 명시
- 새로운 군축방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실현하는데서 북과 남의 『자주적 노력』강조
  - \*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3자회담』을 해야 하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3자회담』실현 노력과 함께 북남사이에서도 문제 해결방도를 적극 모색키로 결정

- 조선반도에 대한 외국무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저히 배제
- \* 남조선에 있는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폭넓게 예견

90. 9. 5 ○ 우리측,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제시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실현,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등

#### <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 ▲군인사 상호방문 및 교류 실시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와 상대방 초청 참관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간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 <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

-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
-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 군사력 상호균형유지의 바탕 위에서 동수 균형감축

- 상비전력 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 감축
-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위한 현장검증과 감시 실시
-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 쌍방간 협의 결정

90. 9. 5 ○ 북측,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 제시

〈북남신뢰조성〉

- 군사훈련·연습 제한 :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훈련 금지 등
-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비무장지대 배치 모든 군사인원·장비 철수 등
- 우발적 충돌과 확대방지 안전조치 : 고위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 병력축감은 군축안 합의 후 3~4년동안 3단계로 실시 :  
▲1단계 30만명선 ▲2단계 20만명선 ▲3단계 종료시 10만명 이하 수준의 병력유지
- 단계적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 축소폐기, 정규 무력축감 첫단계에 모든 민간군사조직·민간무력 해체

< 외국무력의 철수 >

-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 남조선 배비 모든 핵무기 즉시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 등
- 일체 외국군대 철수 공동노력 : ▲남조선주둔 미군과 장비의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한 단계적 완전철수 ▲미군 철수에 상응한 미군사기지 단계적 철폐
- 그밖에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으로 ‘중립국감시군’ 배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불가침선언’ 채택 및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

90.10.17 ○ 북측,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제시

- 『제3조』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 『제4조』 군비경쟁 중지, 『단계적 무력축감』
- 『제5조』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방지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제시

90.11.21 ○ 우리측,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 준비를 위한 제1차 실무대표접촉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채택 제의

< 기본합의서(안) >

- 『제5조』 남과 북은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적인 군비감축’ 실현
- 『제6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불가침협정 체결
- 『제7조』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국제적인 평화보장장치』 마련 등

90.12.12 ○ 우리측,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수정안)』 제시

- ▲군비경쟁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 마련 등
- 불가침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방안 제시
- \*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남북간의 군사정보 개방,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감시와 검증, 국제적 보장장치) 강구 필요 등



-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할 『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제시
  - \* 군사적 대결 및 군비경쟁 상태의 해소와 불가침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 시정』등
- 쌍방 제안중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합의·실천을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강구 등

91. 9.24 ○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첫째,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추진 등 제시

91.10. 3 ○ 북한 연형묵 총리, 제46차 UN총회 군축관련 연설

- 『불가침선언』의 채택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 『군축실현』을 위해 ▲외국군과의 합동군사연습 금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3~4년 동안 남북이 각 10만명 이하로 단계적 무력축소 ▲모든 민간 군사조직·민간무력 해체 ▲새로운 군사기술·장비 도입, 개발 중지 ▲군축의 이행·검증 등을 주장

- 미국대통령의 『전술핵무기 철수 제안』환영 및 남한으로부터 핵무기 철거조치 기대

91. 12. 13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 < 제2장 남북불가침 >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 등) 협의·추진

92. 9. 17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 채택

- 상호무력불사용(제1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제2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제3장),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제4장), 협의·이행기구(제5장) 등 합의

93. 4. 8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및 『대남 4개 요구사항』 채택

< 대남 4개 요구사항 >

- ① 외세의존정책 포기, ② 주한미군 철수 의지 표명,  
③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 영구 중지, ④ 미국의 핵우산 탈피

94. 8.15 ○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관계개선의 첫걸음은 『신뢰』에서부터 출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준수  
촉구
- 남북간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는 『상호비방 중지』  
및 군사적 대결의 종식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실현 강조

<부 록> II

남북한 군축관련 쌍방 주요제의 전문



# 목 차

## 가. 우리측 주요제의 전문

1.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우리측 위원장 발언  
(1973. 3. 15)..... 81
2.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1974. 1. 18)..... 84
3. 전두환 대통령 광복절 40주년 경축사, 당국간 회담에서 『불가침 문제』 토의·해결 천명(1985. 8. 15)..... 88
4. 외무부 성명,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 관련 『남북외무장관 회담』제의(1987. 8. 3)..... 92
5. 최광수 외무부장관, 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에서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 제시(1988. 6. 10)..... 93
6.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우리측 첫발언  
(1989. 2. 8) ..... 96
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기조발언,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제시(1990. 9. 5)..... 99
8.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91. 9. 24) ..... 105

## 나. 북측 주요제의 전문

1. 외무상 남일, 제네바회의 최종회의 연설  
(1954. 6. 15) ..... 109
2. 북한 정부, 인민군 병력축소 관련 성명  
(1956. 5. 31) ..... 114
3. 외무상 허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평화통일  
방안 8개항목 중 군축관련 3개항 제의  
(1971. 4. 12) ..... 117
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기조발언, 군사력 대치상태 해  
소 5개항 제의(1973. 3. 15) ..... 119
5. 김일성, 『후사크』 체코 당 제1서기 환영대회 연설  
(1973. 6. 23) ..... 123
6. 김일성, 조선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연설  
(1975. 10. 9) ..... 125
7.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군비축소회담 개최 제의  
(1977. 1. 25) ..... 129
8. 김일성 제6차 당대회 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관련  
통일국가 『10대시정방침』 중 7항(1980. 10. 10) ..... 131

|  |     |
|--|-----|
| 9.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남편지(6.9자), 『3군사당국자회담』<br>제의(1986. 6. 17).....                             | 132 |
| 10.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편지, 『남북고위<br>급 정치군사회담』 제의(1987. 1. 11) .....                     | 134 |
| 11. 북한 정부, 남북한·미국 참가 『다국적 군축협상』제의<br>(1987. 7. 23).....                                  | 135 |
| 12.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연합회의, 조선의<br>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방안』 제<br>의(1988. 11. 7)..... | 141 |
| 13. 중앙인민회의·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br>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채택<br>(1990. 5. 31) .....       | 150 |
| 1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기초발언(1990. 9. 5) ...  | 156 |
| 15. 연형묵총리, 유엔총회 제46차 회의 연설<br>(1991. 10. 3) .....  | 160 |





## 가. 우리측 주요제의 전문

### 1.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우리측 위원장 발언

1973. 3. 15

#### < 전 략 >

내가 평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누차 강조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뢰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바탕이 없는 속에서 군비를 축소한다, 또는 더군다나 6.25동란이라는 엄청난 민족상잔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당장 군비를 축소한다, 평화협정을 가진다는 것은 누가 이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같이 서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해 두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 거기에서 당연히 그러한 문제는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국민 총생산의 5%에 해당되는 군비를 충당해 가면서 60만 군대를 유지하기에는 힘겨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귀측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귀측 스스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한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군과 군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폭력혁명지령이 전파를 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사람이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또 모처럼 평양을 방문한 내 방에까지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대남비방하는 통일신보란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과연 내가 마음을 놓고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귀측이 내 입장이 되더라도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군비축소문제나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진정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그러한 행위부터 먼저 중지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속에 말로만 평화협정, 말로만 군비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더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는 귀측의 긴 여러가지 애국충정에 넘친 제안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나 추진하는 절차, 순서, 방법 또 가장 내가 중요시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이해와 신뢰가 구축되는 바탕위에서 논의될 문제이고 또 그러한 순서를 다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의한 경제와 사회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귀측의 의견에 대충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 중 략 >

군비축소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칙적으로 반대한 일 없습니다. 나도 군비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남북관계가 공동성명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는 남북관계가 군비축소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만큼 하여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두터이 하자. 그래서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나는 이렇게 제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후 략 >

## 2.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

1974. 1.18

### < 전 략 >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준비를 하고 전쟁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선전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남한에 제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같은 것을 새로 대지 않더라도 지금있는 휴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서명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 후 지난 20여년동안 우리가 알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300여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 남북공동성명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 남북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해해역을 자기들 관할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이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하한 경우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중되어야 한다 하는 이 세가지 글자만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성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을 열번 스무번 맺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자, 그동안에 서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6·23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나가면서 그동안에 남북이 활발히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이 6·23 선언의 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결으로는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평화를 원하는 체하면서 뒷전으로는 판전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책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 전두환 대통령 광복절 40주년 경축사, 당국간 회담에서 『불가침 문제』토의·해결 천명

1985. 8. 15

< 전 략 >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한 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것을 추구해 왔으며, 우리의 결의와 실천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그 전문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국가최고의사로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써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그 내용으로써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사용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을 포함한 7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측은 근자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간은 물론, 어떤 당사자 사이에도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지난 40년간에 줄기차게 추구해온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들이 말하는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장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롯한 수많은 불가침조약이 그 일방의 파기로 휴지화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북한측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로인해 북한측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실천의지와 이행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불필요한 외교적인 경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상호불가침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효성 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개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의 내실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광복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 후 략 >

#### 4. 외무부 성명,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 관련 『남북외무장관회담』제의

1987. 8. 3

##### < 전 략 >

남북한간의 군축문제 협의는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간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상황하에서 군사충돌 방지는 물론,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기존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 후 략 >

5. 최광수 외무부 장관, 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에서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 제시

1988. 6.10

< 전 략 >

우리는 1950년대초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사  
력의 사용을 특히 혐오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굳게 믿고 있습니  
다.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의 황폐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군축을 진전시키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중 략 >

한반도는 불행히도 이같이 군사대립이 첨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가 군축의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  
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군축은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따라 약 150만의 중무  
장한 병력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간에는 국경을 넘은 방문이나 전화나 편지 같은 일체의 접  
촉도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은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같은 절차에는 대화와 모든 분야에서의 접촉의 시작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추구하여 온 것입니다. < 중 략 >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리 목표가 단순해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표가 높을수록 거기에 이르는 길은 더 멀다고 하겠습니까.

국제관계의 현실과 군축에 관계된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유일한 실제적 방안은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적 접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결과를 얻으려면 말 뿐이고 추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한국 대표단은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후속 접촉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써 남북  
한은 『불가침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한반도 균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아국 국무총리의 6월 3일 남북한 책  
임있는 당국간의 각료급회담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후 략 >



## 6.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우리측 첫발언

1989. 2. 8

### < 전 략 >

노태우 대통령은 작년 『7·7 선언』에서 『남북이 서로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관계를 지양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은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의 실현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비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 중 략 >

넷째, 본회담 의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여년 동안 한 겨레이면서도 전쟁과 대립과 갈등을 지속함으로써 건설과 번영에 쏟아야 할 민족역량을 낭비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모적 대결을 하루 빨리 지양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세계에 과시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면서 민족 자존을 훼손시켜온 일부터 중지하여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북간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계개선을 이룩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어느 일방만이 아니라 반드시 상호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간에 다국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결관계를 협력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는 교류·협력의 실시와 함께 군사분야에서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 점은 귀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민족의 장래문제인 통일실현문제와 불가침선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귀측에 전달한 총리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은 6개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① 상호 비방·증상증지 문제
- ②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 ③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 문제
- ④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 남북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가설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군인사의 상호교류
  -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초청
-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 ⑥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 후 략 >

7.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기조발언,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제시

1990. 9. 5

< 전 략 >

나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 남북의 쌍방 당국을 대표하는 고위책임자들이 자리를 같이한 이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 사항에 합의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6. 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8. 남과 북은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8개항 중 관련부문)

< 중 략 >

다음으로 나는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과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심화되어 온 것은 이면적 대결,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오랜 단절에서 온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같은 불신은 남북간의 정치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더욱 가열화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구축을 통해 상호간에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제안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입장에 따라 나는 8개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우리측의 구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 〈정치적 신뢰구축〉

1.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 비방·중상, 전단살포 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일체 중지한다.
2.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상호 개방한다.
3.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 대표부를 설치한다.

#### 〈군사적 신뢰구축〉

4. 군인사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5. 군사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교환한다.
6. 특정규모 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참관케 한다.

1991년 1월 2일을 기해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해 45일전에 상대방에 통보한다.

7.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전화를 즉시 설치·운영한다.
8.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며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쌍방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북간의 군비감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

1.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의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군사력을 공격형으로 편성하고, 전개해 둔 채로 평화의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전력부터 먼저 감축해 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래야만 기습공격 또는 전면공격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한편의 군사력이 많고 다른 한편의 군사력이 적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전쟁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되었을 때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나가되,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4. 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검증단과 상주감시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5.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수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간에 군비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평화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남북간과 한반도 관련 국가들이 참가하는 국제적 평화보장장치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후 략 >

## 8.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991. 9.24

< 전 략 >

의장,

나는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 온 모든 고난이 이땅을 짓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 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 40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 와야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 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 감시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 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무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000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 . .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간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군사·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  
니다.

우리는 유엔 동시가입으로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내달 열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  
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후 략 >

## 나. 북측 주요제의 전문

### 1. 외무상 남일, 제네바회의 최종회의 연설

1954. 6. 15

#### < 전 략 >

우선 조선에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상태의 완화와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회의가 일정한 기한내에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분기별로 전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해당한 국가정부들에 권고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조선의 현존하는 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평화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대책으로 될 것이다.

우리 의견에 의하면 만일 전쟁재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조선에 대량의 군대를 보존하여 둘 필요는 없다.

동원에서 해제된 조선군인들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평화적 노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유지비의 축소는 인민경제의 복구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출을 증대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외국군대의 철거와 남북조선의 군대를 축소함에 관한 제대책의 실천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것과 관련될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다.

본 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들을 심의하면서 남조선정부와 미국정부간에 남조선에 미국의 무력을 무기한으로 중단시키는 권리를 부여한 소위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조약은 남조선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강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약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타산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의 평화강화의 과업과는 양립할 수 없다. < 중 략 >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경제복구를 위한 과업은 현재까지 계

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해안봉쇄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북조선인민은 미국측의 이와 같은 전횡을 용허할 수 없으며 우리 해안에 대한 비법적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상술한 국가들이 조선에서 무장적 충돌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며 조선의 민족적 통일에 대한 과업의 급속한 완수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본 심의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한다.

## 방           안

### -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 -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은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국가를 창건하는 기초위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데 관한 합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조선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할 것.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 기한은 제네바회의 참가국들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

둘째,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에 군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측 군대의 수효 10만명을 넘지 않게 할 것.

셋째,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넷째,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이익과 양립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다섯째,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계선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과학

문화교류, 기타관계를 설정하며 그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기 위한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을 단일한 독립적 민주주의적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급속히 해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

우리는 우리의 방안에 예견된 대책들의 실시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 2. 북한 정부, 인민군 병력축소 관련 성명

1956. 5. 31

조선에서 정전이 체결된 후 3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제관계에서의 긴장상태는 현저히 완화되었다. 현하의 국제·국내관계는 조선에서의 긴장상태가 최대한으로 완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 긴장상태의 금후 완화에 있어서 주요한 장애로 되는 것은 침략적인 국가들에 의하여 계속되는 군비확장이다. 특히 남조선에서의 군비확장은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완화에 커다란 장애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남조선의 평화적 경제발달과 인민생활 개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국제정세가 실제적으로 개선되었고 전체 조선인민이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고 있는 이때 남조선 당국은 미국 지배층의 협조하에 군비를 무단히 확장하며 『북진전쟁』을 공공연하게 선동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남조선 당국은 남조선 인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하고 자기의 침략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항상 존재하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과 가상적인 인민군대의 무력확장을 구실로 삼고 있다. 과거의 경험들이 보여준 바에 의하면 군비확장은 결국 전쟁을 초래하였다.

특히 남조선에서의 군비확장은 지난번 조선전쟁을 야기시켰으며 또 이 전쟁은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시켰고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재난과 고통을 가져왔다. 때문에 조선인민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조선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염원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인민의 염원에 적응하여 조선 문제는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하여 왔으며 남북조선간의 불신임을 제거하고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호상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남북조선의 무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할 것을 벌써 수차에 걸쳐 남조선 당국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이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에 새로운 기여를 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보다 유리한 조건들을 실질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종전에도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금후에도 남조선 당국을 반대하여 자기의 무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2) 1956년 8월 31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중에서 8만 명을 축소한다.

- (3) 상기 무력축소에 적응하여 군사장비와 전투기재를 축소하며 해당 군사비를 평화건설과 인민생활에 충당시킨다.
- (4) 조선인민군대로부터 제대되는 군인들에게는 그들의 소원과 재능에 따라 평화적 직업을 국가적으로 완전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본 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조선 인민들이 남북조선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간의 접촉이 민활하여짐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촉진될 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에 넣고 있다.

만약 남조선 당국도 조선인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민의에 부합되는 이와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상 조치를 취하면서 조선인민군이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믿음직하게 수호하리라는 것과 남북조선 인민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조선에서 동족상잔의 내란을 도발하려는 호전분자들의 모험적 음모를 제때에 폭로 분쇄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3. 외무상 허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평화통일방안  
8개항목 중 군축 관련 3개항 제의

1971. 4.12

< 전 략 >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평화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8개조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협을 조성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풀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며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원래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국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외국군대가 있는 조건에서는 참다운 평화를 바랄 수 없으며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보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 도발행동이 더는 감행되지 않도록 하며 남북이 다같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민들의 군사부담을 덜어주고 남북조선사이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 괴뢰정권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게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무효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국침략자들에게 식민지적 지배와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라를 빗더미우에 올려놓고 민족자본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외국자본 침투의 길을 무제한 열어주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조약과 협정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 후 략 >

#### 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기조발언, 군사력 대치상태 해소 5개항 제의

1973. 3. 15

< 전 략 >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됨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염원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긴장상태의 완화으로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에 부합되고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 민들의 지향과도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이 고위급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풀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마수고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하게 쌍방사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다음과 같은 5개항목의 제안을 협의할 것을 본회의에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

둘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



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넷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풀기 위하여 쌍방 무력의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망라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과 남사이에 확고한 신임의 전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예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안이 실현되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가 급속히 완화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 국면이 열릴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수많은 청장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

을 주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더욱 고무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척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현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일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없으며 이 문제의 토의를 더이상 지연시킬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오해와 불신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되고 대결과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며 결국은 평화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28년동안이나 민족분열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온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거역하는 것이며 절박한 민족적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서로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20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까지 한 조건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가, 안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여부는 쌍방의 입장과 태도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어

면 시기나 단계가 문제로 될 수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장애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선다고 하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면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역사적 숙망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겠는가, 이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견지에 서서 통일을 촉진하는데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라면 그것이 어렵건 쉽건, 크건 작건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그 문제부터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당면한 중심고리로 되는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선행시켜 나가면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앞에 제기된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절위원회 안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외교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후 략 >

## 5. 김일성, 『후사크』 체코 당 제1서기 환영대회 연설

1973. 6.23

< 전 략 >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갖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풀려야만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와 불신을 없애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호상 신뢰의 기초위에서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속에 칼을 품고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속에 품고 있는 칼을 내놓지 않고서는 서로 신뢰분위기를 마련할 수 없으며 북과 남 사이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원만히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써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 당국에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뒤고 미루고 부차적 문제들이나 이러저러한 관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로 호상신임을 두터이하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며 민족분열의 쓰라린 상처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열을 유지하며 고정화하자는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평화통일을 바라고 통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버리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 후 략 >

## 6. 김일성, 조선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연설

1975. 10. 9

< 전 략 >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제국주의입니다. 미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30년동안이나 우리의 부모형제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게 한 장본인이며 오늘 『두개 조선』정책을 들고나와 우리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기간 UN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민족분열 책동, 온갖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UN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모두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제 더는 UN의 깃발을 가지고 미군이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자 요즘 새로운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미제는 UN총회 제30차회의에 『UN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의결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세상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국제여론을 속여 넘기고 실상은 『UN군』의 모자를 다른 모자로 바꾸어 쓰고 남조선강점을 계속하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UN군』이라는 것은 곧 미군이며 따라서 『UN군사령부』해체문제와 미군철거문제는 절대로 떼여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UN군사령부』만 해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은 기만술책을 견어치워야 하며 『UN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 있는 미국군대를 모두 철거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조선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상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수없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매일같이 감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다음 남조선을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군사행동을 하며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치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하면서도 도리어 『북으로부터의 남침 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와있는 것은 『남침위협』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철거할 수 없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북남공동성명에도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한 다음에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평화유지를 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후 략 >

## 7.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군비축소회담 개최 제의

1977. 1.25

< 전 략 >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위에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더우기 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있고 원자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형편에서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한 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까지 커다란 지장을 주면서 귀중한 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는 불합리한 사태를 더는 참을 수 없다.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이 쥐여준 총을 메고 핵전쟁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 방파제가 되려고 하는 그 치욕을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는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긴장상태는 완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핵기지는 철폐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삭감하여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 시키는데 돌려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이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쌍방당국이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의한다. < 후 략 >

8. 김일성 제6차당대회 보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관련  
통일국가 『10대시정방침』중 7항

1980. 10. 10

< 전 략 >

일곱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호상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련방국가는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15만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군사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군사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련방국가는 조선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군대로서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보위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 후 략 >

9.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대남편지(6.9자), 『3군사당국자회담』제의

1986. 6.17

< 전 략 >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온 민족을 핵참화에도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에도 남에도 다 같이 이로운 것이 없다는 점을 나도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가 못하는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잇는가 잇지 못하는가 하는 중대한 시기에 온 겨레와 인류는 우리들, 책임있는 군사당국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평화발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염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남조선주둔 연합국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을 취하려는 진지한 염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남조선주둔 연합국군총사령관이 참가하는 군사당국자회담을 가질 것을 귀하에게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군사당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전쟁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가장 긴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를 협의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서는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의 직접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는 문제, 병력과 군비를 축소하는 문제, 조선정전협정을 원안의 요구대로 준수하는 문제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에서는 이밖에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귀하가 제기하는 문제들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 략 >

10. 정무원 총리·인민무력부장 명의의 대남편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

1987. 1. 11

< 전 략 >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에서는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 기초우에서 북남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호상 비방 중상을 중지하며 북과 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적뉴대를 도모하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당면한 조치로서는 무력을 축소하고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그만두는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쌍방의 군사행동을 감시할 기구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체스꼬슬로벤스꼬, 폴스까, 스위스, 스웨리예의 군사인원들로 중립국감시군을 조직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 략 >

## 11. 북한 정부, 남북한·미국참가 『다국적 군축협상』제의

1987. 7.23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현 시대가 인류앞에 제기하고 있는 가장 엄숙한 과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평화위협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불안정한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조선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이후 여러차례 매우 위험한 고비를 겪으면서도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평화를 자기의 본성적요구로 삼고 있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과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다.

이러한 대치상태는 날을 따라 더욱 격화되고 있다.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도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위험한 단계에 놓여있으며 이것은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의 항시적인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첨예한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끝없이 지속시켜서는 안되며 하루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북과 남의 군대를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데 대한 문제, 3자회담을 진행하여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긴장완화 제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긴장완화의 새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를 하였다.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전후 미국과 남조선측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었던 1956년에 8만명의 병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으며 1986년에는 15만명의 병력을 평화적건설에 동원시키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합리적인 긴장완화방안들과 실천적조치들은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들과 발기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겉으로는 완화에 대하여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전략적지위를 강조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을 급격히 보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전개한, 1,000여개의 핵폭탄과 핵탄두를 발사운반할 수 있는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1988년 올림픽경기의 <안전개최>를 구실로 미국태평양함대무력을 남조선연안해역에 배치하고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데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조선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의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 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무력축감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은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 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만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 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 권능확대와 중립국 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으로써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 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나서리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12.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연합회의,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1988. 11. 7

< 전 략 >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선택여하에 달려있다.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은 수십년동안 민족의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워져있는 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국면을 과감하게 타개해 나가야 할 때이다.

평화에로의 귀중한 새 출발이 목전에 이른 오늘 북과 남은 응당 공동의 평화강령으로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함께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보조를 같이해 나가야 한다.

연합회의는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평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분열된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조선>으로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정착>이라는 간판밑에 평화를 분렬주의적인 <두개조선>조작에 리용하려는 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서만 공고히 담보될 수 있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 뿐 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힘의 입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도로 줄이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조선의 북과 남이다.



조선반도 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 토의에 이리저리한 나라들을 끌어들이어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정표이다.

북과 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그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현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의 철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예견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④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특전대병력부터 먼저 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 < 전 략 >

####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외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 후 략 >

13.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0개항 채택

1990. 5.31

우리민족은 지난 40여년 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보지 못하였다.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셔져도 조선반도에서만은 긴장상태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북과 남의 우리민족은 귀중한 나라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면서 너무도 오랜 세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속에서 살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북과 남은 날을 따라 가중되고 있는 대결과 전쟁위험을 더이상 방관시해서도 안되며 수십년 동안 민족의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워져있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어나가는데서 주저해서도 안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그 누가 선사하지 않으며 더우기 빈말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다.

우리민족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쟁취하고 우리나라가 외세의 각축장으로, 참혹한 핵전쟁마당으로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세계가 어떤 동란을 겪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떻게 하나 온 겨레가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우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데 대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이다.

불가침선언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북과 남의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군축을 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할 수 없고 통일을 위한 대화도 성공시켜 나갈 수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실현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낫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겨레의 념원과 국제적추세에 맞게 대폭적인 단계적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는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축방안을 천명한다.

### < 북남실회조성 >

####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 ① 외국군대와외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②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③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④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①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 ②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①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도발행위를 금지한다.

〈 북남무력축감 〉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①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 ③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갱신을 중지한다.

- ① 새로운 군사 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 ①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정형을 검증한다.

#### < 외국무력의 철수 >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 ① 남조선에 배비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②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①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되도록 한다.
- ②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0.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주되는 당사자인 것만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나 3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 14.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기초발언

1990. 9. 5

< 전 략 >

다음으로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 < 북남신회조성 >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 (1) 외국군대와외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2)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3)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4)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5)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1)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 한다.

- (2)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 (3)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
- 3) 북과 남은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1)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2)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 도발행위를 금지한다.

#### ◁ 북남무력축감 ▷

-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1)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2)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 폐기한다.
  - (3)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갱신을 중지한다.

(1) 새로운 군사기술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1)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2)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이행정형을 검증한다.

#### < 외국무력의 철수 >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1) 남조선에 배비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철수 되도록 한다.
- (2)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되도록 한다.

〈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 (2)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후 략 >



## 15. 연형묵 총리, 유엔총회 제46차회의 연설

1991. 10. 3

< 전 략 >

우리는 북남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조선반도에 조성된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백만대군이 긴장한 태세에서 대치되어 있습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포를 겨누며 속에 칼을 품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조선반도에서 언제 가도 정세를 완화할 수 없고 긴장상태를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첨예한 대치상태를 풀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서 이미 오래 전부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한다면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계를 공고한 평화체계로 전환시키고 북남사이의 대결을 해소하는데서 결정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침선언의 채택과 함께 북남사이의 군축을 실현하여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긴장성과 전쟁의 위험이 극한점에 이르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이것을 가시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의 신뢰를 도모할 수 없고 평화통일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미 조선반도에서 군축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과 남이 외국군대와외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금지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평화적 목적에 리용하며 우발적인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무력을 3~4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각각 10만명아래 수준으로 유지하며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하며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리행정형을 검증할데 대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평화지향적인 군축제안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병력을 주동적으로 축감하는 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평화발기들은 일방적인 노력으로 그쳐지고 더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이 군축을 하는데 합의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선다면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위협성이 제거되고 북과 남사이  
의 불신도 해소될 것이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이 각각 유엔에 들어간 조건에서 이제는 남  
조선에 와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을 철수하며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간주  
합니다. < 후 략 >

## 군사분야 관련 남북합의서 전문

### 목 차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165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  
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  
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 17)..... 167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1992. 5. 7) ..... 172



## 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중 략 >

###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 후 략 >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 9.1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



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 제 2 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에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 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제 3 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 제 4 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 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 제 5 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 제 6 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5. 7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